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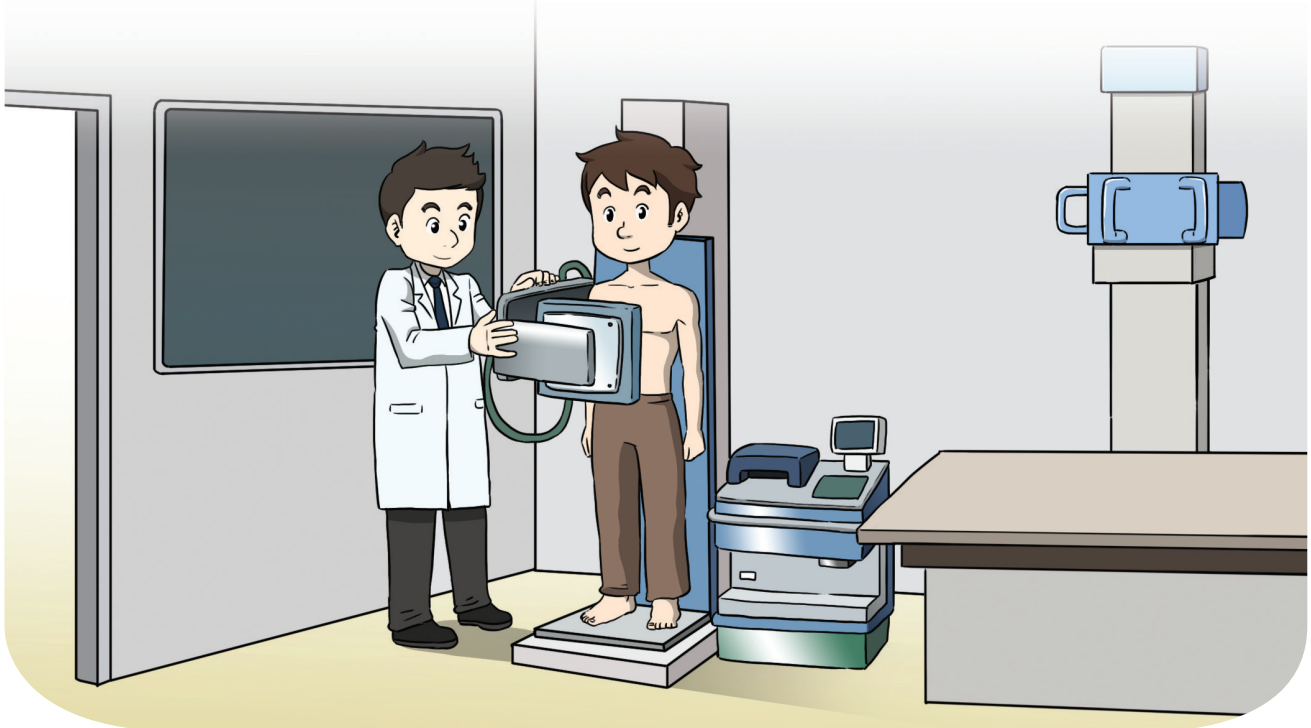
근로자 건강진단제도



근로자 건강증진

건강진단이란?

- 건강진단이란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애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한다.
- 근로자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이다.
-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.



건강진단의 종류

- **일반건강진단** : 근로자의 건강 보호·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한
- **특수건강진단** :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한
- **배치전 건강진단** :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위한
- **수시건강진단** :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애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한
- **임시건강진단** :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한





일반건강진단

■ 목적

- 고혈압, 당뇨 등 일반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

■ 대상 및 실시주기

-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(사무직 : 2년에 1회 이상, 기타 : 1년에 1회 이상)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
 - ※ 사무직 근로자 :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·인사·경리·판매·설계 등 사무업무(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자 제외)에 종사하는 근로자

■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

-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
-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
-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
-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
-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
-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

■ 건강관리 구분

구분	건강관리 내용
A	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(건강자)
C ₁	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(직업병 요관찰자)
C ₂	일반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 (일반질환 요관찰자)
D ₁	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(직업병 유소견자)
D ₂	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(일반질환 유소견자)
R	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 (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)

※ 특수건강진단 2차검사항목 추가검사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당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“U” 로 분류함





특수건강진단

■ 목적

-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

■ 대상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(D1)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
■ 실시 시기

-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
- ※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

구분	대상 유해인자	시기	주기
		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	
1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	1개월 이내	6개월
2	벤젠	2개월 이내	6개월
3	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	3개월 이내	6개월
4	석면, 먼 분진	12개월 이내	12개월
5	광물성 분진, 나무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	12개월 이내	24개월
6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개월 이내	12개월

- 다음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정해진 주기의 1/2로 단축
 -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
 - 직업병 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근로자
 -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

■ 특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

-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(방사선)
-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(광물성 분진)
-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(방사선)
-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(해당 유해인자에 한한다.)



건강진단 후 조치사항

✓ 조치사항

-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,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
-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

구분	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
가	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
나	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)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다	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)
라	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

-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시행

✓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

-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간 보존,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
- ※ 발암성 확인물질 : 허가대상유해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

✓ 위반 시 벌칙

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
-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
 -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
 -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
 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

✓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고, 건강진단 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